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70 | 2025.01.20 (2025.01.13.~2025.01.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13.~2025.01.19.)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 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총 저수용량 2천만㎥ 미만인 댐 등의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의 대상 및 추가금액 등을 개정하기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31인)」**,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정태호의원 등 24인)」** ,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문체위>, <복지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환노위>에서는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및 대우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중소벤처기업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1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2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1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15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6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1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19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31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2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23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3
-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 · 정태호의원 등 24인) 24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4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5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5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6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2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8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 [방송통신(TMT)]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시사점
- [방송통신(TMT)]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및 시사점
- [지적재산권] 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
- [ESG] ESMA의 펀드명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Q&A 소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9 (2025년 1월 3째주)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발표 - (인공지능) 국가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인공지능 대전환·신산업 정책기금(8,100억원) - (전략기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착수, 누리호 4차 발사 - (기술사업화) 국가연구개발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 (선도형 연구개발) 12대 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 확대 - (기초연구) 기초연구 역대 최대 지원(2.93조원), 출연연 세계 최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신규 10개 지정 - (인재) 연구생활 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확대,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청년일자리 지원 - (민생) 디지털민생범죄 근절,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포용·통신편익 강화 - (안전) 디지털재난관리체계 현장 착근, 사이버위협 24시간 집중관리체계 운영 - (지역)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 추진, 지역 전략분야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 지원	2025-01-13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업무보고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되었음

① 인공지능 세계(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기반시설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
-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인프라) 종합대책’ 수립(’25.1분기),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조기 마련(’25.상반기)
-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인공지능 전환(AI) 신생기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기금(’25년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
-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

② 첨단생명과학(바이오) ·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 추진
- ‘인공지능 생명과학(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
-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25.下)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 사업 본격 착수
- ‘과학기술 혁신기금’(’25~’28, 민간 1조원 이상 목표) 통한 투자 촉진,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 강화

③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 관계부처 합동 ‘가칭국가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25.1분기)
-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
- 출연연,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

④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정착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연구개발 투자를 ’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의 35%로 확대
-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
-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을 추진
- ‘과학기술 외교 추진전략(이니셔티브)’ 수립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 추진

⑤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25년 2.93조원)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
-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일괄형(패키지형)으로 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25.상반기)하고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
- ‘세계 최정상급(글로벌TOP) 전략연구단’을 ’25년 신규 지정(10개 내외), 출연연 간 개방·교류 확대

⑥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
-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
-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강화(보상비율 현 50% 이상 → 60% 이상)

⑦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 · 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
- 통합요금제 신설,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 개선
-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25.1월),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

⑧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 추진(’25.하반기)
- 인공지능이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 본격 가동

⑨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하고,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 마련(’25.하반기)
- 연구개발특구 기금 및 지역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캐즘 대응)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및 조기 집행, 충전소 확충 및 이용 합리화, 화재대책 이행 지속 점검
- (첨단 기술력 강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로드맵 수립('25.上),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5.下)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 7.9조원 지원(30% 확대),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제혜택 예정
- (대외 불확실성 대응): 아웃리치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마더팩토리 투자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2025-01-15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음.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친환경차, 이차전지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마련하였다고 밝힘

금번 방안은 크게 4가지 범위에서 ①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②첨단 기술력 강화, ③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④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하였음

①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 등 수요층 확대를 유도
-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7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 확대
-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 추진
-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 경쟁력 향상을 지원

②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기술력 강화

- '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
-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6년까지 개발할 계획
- 배터리, 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
-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

③ 튼튼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

-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작년보다 30% 이상 증액한 7.9조원 투입
- 작년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폐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25년 국비 252억원을 지원

- 작년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 지원
-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

④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

-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
-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하여 신흥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
-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 합동 ‘투자·규제 애로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원천기술 사업화에서 신약개발까지 선순환 혁신 생태계 조성
- 후보물질 발굴부터 신약개발까지 집중 지원하기 위한 0.4조원 규모의 바이오펀드를 올해 중 신규 조성

2025-01-15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①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②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③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④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의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밝힘

세계 5대 바이오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유니콘 3개 이상 육성 기술수출 30조원 이상



전략 1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1 바이오창업의 질적 성장 도모

기획창업 활성화	제약바이오 전문 컴퍼니 빌더 도입 및 초기 기술사업화 로드맵 수립 지원
보육기반 확충	지역 및 수도권외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보육·지원 및 연계 강화
인프라 고도화	산·학·연·병 협력 기반, 바이오벤처의 주요관점에서 K바이오랩허브 설계

2 바이오벤처 기술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후보물질 탐색	개방형 실험실
목표에 적합한 물질 개발을 위한 R&D 기획	임상 미충족 수요를 반영한 시장수요형 기술개발
글로벌 협력 R&D	가치평가 및 IP 확보
신약개발 경험이 많은 해외와 기술협력 기획	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한 데이터 및 IP 확보

전략 2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1 바이오 모험자본 공급확대

단계별 투자



바이오전용 스케일업 팀스 프로그램 구조도

지원대상	1차매칭	필요시
K-바이오벤처포터즈 (VC)로부터 3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바이오벤처	최대 40억/기업	중기부 모태펀드 매칭

... 글로벌 투자사 투자 설명회 ...

2 신약개발을 위한 자금공급 지속 확충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을 위한 K-바이오·백신펀드 지속 조성

전략 3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1 국내 제약기업의 개방형 혁신 역량 강화

국내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 공동 기획 - 협업 성공모델 발굴 - 신약 파이프라인 공동기술개발 추진

2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글로벌 제약기업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 국내 바이오벤처 핵심 정보 제공 - 해외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접점 확대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 오픈이노베이션 공동기술개발 - 개방형 혁신 전주기 컨설팅 지원

전략 4 바이오벤처 혁신 기반 확충

1 해외실증과 분산형 임상상을 통한 규제혁신

해외실증	분산형 임상
- 규제지원 미러링 플랫폼 도입 - 선도국가에서 현지실증 추진, 제도개선 환류 - 중북 첨단재생바이오통한 해외실증과 분석	- 실증 플랫폼 구축 - 분산형 임상시험 시험사업, 신뢰성 입증 - 강원시헬스케어를 통한 요소기술개발

2 전략적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 바이오벤처 생태계 연결
- R&D, 임상 등 클러스터 협력강화
- K바이오 글로벌 원팀 구축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24 시행 예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068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업무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2025-01-17 시행
---------	-----------------------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기업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혁신전담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03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17조)

- 기업인재개발기관 및 인재혁신전담부서의 지정 기준을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지원·관리하는 전담인력과 강의인력을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수 이상 보유하고,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며, 첨단산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등으로 정함
-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지정신청서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개요서, 전담인력 및 강의인력 보유 현황,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의 등록요건 (제21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한 실무경력이 13년 이상인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첨단산업인재 전문양성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③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및 지원사업의 내용 (제33조)**

-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대상을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기업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지원 사업 및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1-16 시행

국가와 해저조광권자 간 합리적인 수익배분을 위해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던 조광료를 매출액과 투자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해저조광권자에게 조광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판매가격 등 조광료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1-17 시행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요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배송에 이용하기 위한 요건 등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신설)

-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는 자가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관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는 자가 화물의 집화·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관련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기간 (제14조의2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기간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의 경우에는 2년부터 20년까지로 범죄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함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제14조의3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그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 등은 조회 요청을 받으면 조회 대상자의 종사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도록 함

④ 범죄경력 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 신설)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종사자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1개월 이내에 해당 종사자와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위반기간 및 차수에 따라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1-14 시행

해양이용·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해양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면서 그 명칭을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로 변경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해양이용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때 평가준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 하도록 하고,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 경우와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15. ~2025.02.25.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하여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을 활성화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을 확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편의를 제고하며, 더 많은 기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국세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요건 및 신청 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군부대, 교도소, 학교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허용 (안 제27조제2항제1호의3 신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청년 또는 청년단체로 제한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수의 사용허가 명확화 (안 제27조제3항제4호의2)**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로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③ **청년, 청년단체, 청년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안 제29조제1항제8호 신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10 이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④ **사용료 통합징수 대상 확대 (안 제30조제4항)**
 - 종전에는 연간 사용료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징수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용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제고함
- 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요건·기간 완화 (안 제40조제3항제28호)**
 - 대상 기업 요건에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폐지함
 - 피상속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 또는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신청인 요건으로 종전에는 대표이사과 최대주주 요건을 동시에 요구했으나, 앞으로는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 종전에는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물납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함
- ⑥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비용 포함 (안 제42조제1항)**
 - 국유재산 처분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⑦ 국유재산 매각 절차 간소화 (안 제52조제4항제1호)

- 용도폐지된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부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용도로 필요한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거나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군부대, 교도소 및 학교의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⑧ 국·공유재산 교환 시 국유재산의 평가방법 개선 (안 제57조제6항)

- 국유재산을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국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국·공유재산 간 교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tel:044-215-515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15.
~2025.02.24.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 (안 제3조제1항)
- ②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 (안 제51조의3제2항)

※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tel:044-203-248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16.
~2025.02.2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예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문화산업 수출보증’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의3)
- ② 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명칭 변경 (안 제10조의2~제10조의4, 제10조의6~제10조의9)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 \(전화: 044-203-2485, 팩스: 044-203-3464\)](tel:044-203-2485)

환경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16.
~2025.02.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현행 정비사업 대상 댐은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또는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이며, 정비사업비 중 추가금액의 한도는 2002년부터 200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도 댐 건설 시, 수몰, 주민 이주 등 지역 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대상 및 추가금액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댐 중에서, 총 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을 정비사업 대상으로 포함 (안 제36조)
- ②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의 추가금액 한도를 상향하고, 저수면적 및 총저수용량에 따른 계수 조정 (안 별표4)
- ③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사업 내용을 지역사회 요구와 변화된 농·어촌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 (안 제36조 및 별표3)

※ 문의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전화: 044-201-7694, 팩스: 044-201-7699\)](tel:044-201-7694)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1.16.
~2025.02.2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창업지원 대상 선정 방식, 절차 등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이에 창업지원 등을 위한 선정 절차 등 규정함. **사업 목적 및 지원대상,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기로 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전화: 044-200-5253\)](tel:044-200-525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025-01-14 발의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임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32조)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4인)	2025-01-13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한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 등은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감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다양화되어 사회적 폐해가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회계분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회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2025-01-14 발의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중고거래 사기는 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중고거래 활성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 간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및 제2조의5)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1인)

2025-01-15 발의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의2제4항)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2025-01-15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填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4항)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1-15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1-16 발의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권 판매업체의 계획도 발표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생체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의 한 유형으로 규율하고 있어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연 또는 운동경기 입장권 구입 시에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민감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하여 생체정보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과도한 민감정보의 처리를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2025-01-14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공제하여 주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이에 대한 공제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31인)

2025-01-14 발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지상파방송들의 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방송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재허가·재승인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칫 불법방송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허가 유효기간 내에 재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진행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안 제17조제5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5인)

2025-01-16 발의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또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보다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검열하거나 감시, 조사 및 감청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굳건히 지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제4항 및 제70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01-14 발의

현행법은 게임물의 등급 분류, 유통 및 제공 기준 설정, 불법 유통 금지 등 게임 산업 전반의 규제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게임물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즐기는 대표적인 취미 활동이지만,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게임물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는 미흡한 실정이며 게임 회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 증진을 보장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게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함 (안 제2조제12호, 제3조제2항제8호 및 제15조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2025-01-17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 집단급식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농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는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원산지 미표시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배달 음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

또한, 애플리케이션 운영자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법률 위반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있어,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자로서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산지 표시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6항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4인)

2025-01-13 발의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1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1-15 발의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임

그런데,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관련하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고용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해당 화력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 등은 경제적 기반을 잃고 지역 경제는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명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그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이종배의원 · 정태호의원
등 24인)

2025-01-17 발의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수소 사업 진 · 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025-01-13 발의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 육성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97조)

보건복지위원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5인)

2025-01-13 발의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45조)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5-01-16 발의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2025-01-13 발의

현행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15세 이상 2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범위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등 법령마다 청년 연령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약 1년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15세임을 감안하여 청년 연령의 하한은 15세로 유지하되, 상한 연령은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4세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호)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2025-01-14 발의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유형인 휴업과 휴직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법률의 규정상 구분되어 있어 하위법령에서 유형별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노동법상 휴업이나 휴직과는 다른 개념임에도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 법 규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이러한 현행 규정에 따른 제도는 긴박한 경영난으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지원 신청을 지연시키고, 휴업과 휴직의 요건이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초래하는 등 불편도 야기하고 있음

이에 **현행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으로 ‘휴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실시 및 지원조건 등을 보다 간단·명료한 내용으로 정하여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이 **현저한 경기 변동으로 대규모 고용위기가 초래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고용정책 기본법」 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적기에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1조제1항 및 제3항)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8인)

2025-01-15 발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5-01-15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소각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부재함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역 입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존 재활용시설의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4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5-01-17 발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하청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노동자의 50~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고, 국제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한편,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왜곡될 수 있는바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함께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설립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01-14 발의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2025-01-15 발의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안 제51조 및 제53조)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2025-01-15 발의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과방위	전체회의	1/20(월) 10:00	- 12.3 내란 하 방송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마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문체위	전체회의	1/21(화) 10:00	- 법안 의결, 현안질의
문체위	법안심사 1소위	1/21(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심사 2소위	1/22(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3(수) 10:0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환노위	전체회의	1/21(화) 10:00	-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21(화) 10:00	TV홈쇼핑의 위기, 유료방송과 상생방안 마련 토론회	박충권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21(화) 14:00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	임미애·박지원 의 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21(화) 14:00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토론회	박상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2(수) 14:00	먹거리 유통산업 탄소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23(목) 10:30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국익	조정식 의원실 등	국회 본청 245호
	1/23(목) 14:00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1/22(수)	「World&Law」 2025-1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수)	「금주의 서평」 제713호(2025-4호) 발간		
	1/23(목)	「팩트북」 제115호 발간		
	1/24(금)	「NABO 경제동향」 2025년 1월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6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3(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호 발간	국회도서관	
	1/15(수)	「금주의 서평」 제712호(2025-3호) 발간		
	1/14(화)	「NABO Focus」 제87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3(월)	‘발전용댐 용수 활용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이슈와 논점)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1.13.~2025.01.1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3(월)	방송통신 (TM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1/13(월)	방송통신 (TMT)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및 시사점
1/14(화)	방송통신 (TMT)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및 시사점
1/14(화)	지적재산권	2025년 시행 예정 지식재산 관련 법률 개정안 소개
1/16(목)	ESG	ESMA의 펀드명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Q&A 소개
1/17(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19 (2025년 1월 3째주)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